

경기도 공고 제2023-5572호

2023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 공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「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시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5. 26.
경 기 도 지 사

1. 시행일 : 2023년 7월 1일(토) 04:00부터

2. 택시요금 요율 조정 내역

1) 택시 구분별 조정내역(표준형 기준)

구 분		조정 전('19.5.4)	조정 후('23.7.1)	
중형택시 (37,428대)	인상률	20.05%	22.56%	
	기본요금	2.0km까지 3,800원	1.6km까지 4,800원	
	거리요금(100원)	132m	131m	
	시간요금(100원)	31초	30초	
	합중 요금	심야시간	20%(24시~04시)	30%(23시~04시)
		사업구역외	20%	20%
모범· 대형승용 (259대)	인상률(%)	19.54%	8.43%	
	기본요금(3km)	6,500원	7,000원	
	거리요금(200원)	148m	144m	
	시간요금(200원)	36초	35초	
	합중 요금	심야시간	없음	20%(23시~04시)
		사업구역외	없음	없음
소형택시 (없음)	인상률(%)	14.29%	19.86%	
	기본요금(2km)	2,700원	3,500원	
	거리요금(100원)	148m	142m	
	시간요금(100원)	36초	34초	
	합중 요금	심야시간	20%(24시~04시)	30%(23시~04시)
		사업구역외	20%	20%
경형택시 (없음)	인상률(%)	14.29%	19.86%	
	기본요금(2km)	2,600원	3,400원	
	거리요금(100원)	165m	162m	
	시간요금(100원)	40초	39초	
	합중 요금	심야시간	20%(24시~04시)	30%(23시~04시)
		사업구역외	20%	20%

2) 유형별 · 시군별 조정 내역(중형택시 기준)

조정 전(2019.5.4)		조정 후(2023.7.1)		
요금 유형	요금내역	요금 유형	요금내역	
[표준형 (15)] 수원, 성남, 고양, 부천, 안산, 안양, 남양주, 의정부, 시흥, 파주, 김포, 군포, 구리, 의왕, 과천 (10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요금(2.0km) : 3,800원 ■ 이후요금 - 거리요금 : 132m당 100원 - 시간요금 : 31초당 100원 	⇒	[표준형 (15)] 수원, 성남, 고양, 부천, 안산, 안양, 남양주, 의정부, 시흥, 파주, 김포, 군포, 구리, 의왕, 과천 (10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요금(1.6km) : 4,800원 ■ 이후요금 -거리요금 : 131m당 100원 -시간요금 : 30초당 100원
[가형 (8)] 용인, 화성, 평택, 광주, 하남, 오산, 양주, 동두천 (표준의 109.1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요금(2.0km) : 3,800원 ■ 이후요금 -거리요금 : 104m당 100원 -시간요금 : 25초당 100원 	⇒	[가형 (8)] 용인, 화성, 평택, 광주, 하남, 오산, 양주, 동두천 (표준의 108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요금(1.8km) : 4,800원 ■ 이후요금 -거리요금 : 104m당 100원 -시간요금 : 25초당 100원
[나형 (7)] 이천, 안성, 포천, 여주, 양평, 가평, 연천 (표준의 12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요금(2.0km) : 3,800원 ■ 이후요금 -거리요금 : 83m당 100원 -시간요금 : 20초당 100원 	⇒	[나형 (7)] 이천, 안성, 포천, 여주, 양평, 가평, 연천 (표준의 118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요금(2.0km) : 4,800원 ■ 이후요금 -거리요금 : 83m당 100원 -시간요금 : 20초당 100원

* 광명시는 서울요금 적용(서울 구로·금천구와 사업구역 통합)

3) 할증요금 적용

- 심야운행 할증 : 운행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3:00~04: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30% 할증
- 시계외운행 할증 :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% 할증

4) 기타 부가 요금

- 통행료 : 승객의 요구(수락)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 시 승객이 실비 부담